

## 뉴욕 발달장애인 사무소(OPWDD)의 서비스를

###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#### **OPWDD 의 정보 전화 1-866-946-9733**

OPWDD 는 각 자치구의 해당 지역 발달 장애 서비스 사무소(DDSO)를 통해 발달 장애인을 식별하고 OPWDD 기금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심사합니다. OPWDD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일반적으로 개인이 OPWDD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OPWDD 주거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본 사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OPWDD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지를 찾아가는 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

#### **OPWDD 자격 설명**

**OPWDD 자격**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)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DD);

**그리고**

2) 22 세 이전의 장애 발병; **그리고**

3) 장애가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; **그리고**

4)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기능 장애의 증거.

#### **적격 장애**

**OPWDD 적격 발달장애**는 다음과 같습니다: 지능 장애(ID), 지능 장애와 "밀접한 관련이 있는" 상태, 자폐 스펙트럼 장애(ASD), 뇌성 마비(CP), 간질, 신경 장애 및 난독증(진단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음).

#### **TIPS:**

- 적격성 근거를 밝히십시오(예: 신청자의 IQ 가 70 이 넘지만 자폐증이 있는 경우, 자폐증을 적격성 근거로 식별합니다)
- 전문가의 리포트를 받아 제시합니다

-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: 학교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모든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.

부모나 다른 보고자는 아이가 발달 장애로 겪고 있는 제약들을 진술서로 남겨 활용하십시오.

### **1 단계 신청 절차("정문")**

- ❖ 신청서 양식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십시오.  
[https://opwdd.ny.gov/sites/default/files/documents/eligibility\\_transmittal\\_form\\_0.pdf](https://opwdd.ny.gov/sites/default/files/documents/eligibility_transmittal_form_0.pdf)
- ❖ "웹 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번역 버튼"을 통해 적격성 관련된 OPWDD 웹 사이트의 제반 양식 및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
- ❖ 모든 신청서는 OPWDD 해당 발달장애 지역 사무소(DDRO)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❖ 신청서는 신청자, 가족, 학군, 또는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❖ 각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발달 장애를 증명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❖ 각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지능 지수(IQ) 테스트 결과;
  - 적응 기능 테스트 결과(일반적으로, 바인랜드);
  - 심리 사회적 보고서; **그리고**
  - 의료 기록.

이 단계에서 DDRO는 신청자의 적격성을 발견하여 판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DDRO는 1 단계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.

### **2 단계 신청 절차(신청서 심사)**

- ❖ DDRO는 신청서를 추가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제출한 신청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며 DDRO 내 다른 팀에게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전송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❖ 심사관은 신청자의 새로운 정보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❖ 그런 다음 심사관은 신청자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. DDRO는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.

- ❖ 2 단계에서 부적격으로 밝혀진 신청자는 2 단계 심사관과 면담하면서 부적격으로 결정한 이유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.

### **3 단계 신청 절차(서면 이의신청)**

- ❖ 2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3 단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에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경우, 신청자는 이 단계에서 메디케이드 공청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2 단계 결정과 함께 발송된 통지에는 공청회 요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
- ❖ 3 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 정보만 심사합니다. 대면 회의(만남)는 하지 않습니다.
- ❖ 신청자는 3 단계 이의 제기 기간에 추가/신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격성을 증명할 만한 주장들을 서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

### **4 단계 신청 절차(적법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)**

- ❖ 신청자는 3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**60 일 내에 뉴욕 주 행정심리사무소의 임시 장애지원사무소("OTDA")에 적법 절차에 따른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 유용한 정보와 여러 문서 양식이 있습니다. <https://otda.ny.gov/hearings/request/>

### **추가 정보**

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OPWDD 적격심사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.

[https://opwdd.ny.gov/opwdd\\_services\\_supports/eligibility/documents/eligibility\\_contacts\\_ddsos](https://opwdd.ny.gov/opwdd_services_supports/eligibility/documents/eligibility_contacts_ddsos).

주 정부가 발달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며 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: [https://opwdd.ny.gov/opwdd\\_services\\_supports/eligibility/faqs#q5](https://opwdd.ny.gov/opwdd_services_supports/eligibility/faqs#q5).

### **TIPS**

- 적격성 근거를 밝히십시오(예: 신청자의 IQ 가 70 이 넘지만 자폐증이 있는 경우, 자폐증을 적격성 근거로 식별합니다)
- 전문가의 리포트를 받아 제시합니다
-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: 학교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모든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.
- 부모나 다른 보고자는 아이가 발달 장애로 겪고 있는 제약들을 진술서로 남겨 활용하십시오